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2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이성윤·박해철·권칠승

김준혁 · 김문수 · 정을호

위성락 • 황명선 • 추미애

박지원 • 서미화 의위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

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 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생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현행과 |
| 략) | 같음) |
| <u><신 설></u> |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 |
| | 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 |
| |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
| |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 |
| | 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 |
| | <u>으로 본다.</u> |
| <u>②</u> ~ <u>⑤</u> (생 략) |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 |
| | 항까지와 같음) |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② (생 |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 |
| 략) | 행과 같음) |
| <u><신 설></u>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
| |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
| |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
| | 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 |
| | <u>다.</u> |